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임상연구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서

주소: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22 / TEL:02-2258-8116 / FAX:02-2258-8214

문서번호	KIRB-신20200514-015							
과제제목	Retroperitoneal sarcoma에서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의 실제							
과제번호	KC20RISI0350					접수번호	2020-1032-0001	
책임연구자	소속	L병원/산부인과	실/산부인과		성명	이근호		
의뢰기관	해당없음					연구비지원기관	해당없음	
심사대상	신규과제							
심사일	2020년 05월 14일					승인일	2020년 05월 14일	
심사결과	승인			● 심사 결과 별 유의사항 - 승인 : 신규과제의 경우 "승인"일 때 연구 개시 가능 - 시정후승인 또는 보완 : 3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필요				
연구승인유효기간	2021년 05월 13일			 ● 연구의 지속을 위하여 연구승인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지속심사 승인을 득하십시오. ● 임상연구 종료 시 승인유효기간 내에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. 				
심사내역								
심사 의견	▶ <심사결과> 승인 관련 규정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IRB에서는 해당 연구의 변경을 "승인"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1. 승인유효기간: 2020-05-14~2021-05-13 2. 지속심사 주기: 연구 기간 중 연구 진행에 대하여 1년 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3. 지속심사 신청서는 승인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제출하여 주십시오. 4. 승인 유효기간 이후에도 연구를 지속할 경우, 지속심사주기/승인유효기간 내에 지속심사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거나 연구가 종료된 경우 종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▶ 안내사항 1. 심사결과 통보서: 연구자가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해당 연구의 문서와 함께							
안내 사항	보관하시기 바랍니다. 2. 종료보고: 연구 종료 시 종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3. 연구 기간 연장 시 변경계획서를 통하여 연구기간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4. 연구 완료 후 임상연구 관련 문서는 관련 법률 및 기관규정에 따라 이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, 상세 절차는 임상시험센터 문서보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5. 심사결과 문의처: 서울성모 2패널 IRB 행정간사 (02-2258-8198)							
파일명(제출자료명)			버젼			첨부파일명		
계획서						S.임상연구계획서_retroperitoneal sarcoma_최종_IRB수정 요청1차수정_제출용.doc		
증례기록지			01 ret		retro	troperitoneal sarcoma CRF_수정.xlsx		
임상시험자 자료집(IB) 또는 근거논문			Treatment of retroperitoneal Tr sarcomas van Houdt et al.		Treatment_of_retroperitoneal_sarcomacurrent.7_참고 문헌2.pdf			
근거논문2			s10 ²		s1043	10434-014-3965-2_참고문헌1.pdf		
동의면제사유서			동의			동의면제사유서.docx		

출력시간: 2022-06-02 21:56:51 Page: 1/2

- 귀하가 신청한 심사안건에 대하여 본 임상연구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본 심사결과 통보서는 연구자가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해당 연구 문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- 책임연구자는 IRB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IRB 심사일로부터 3주 이내에 이의 사유를 기록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. 단, 동일 사항에 대하여 2회 연속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- 본 임상연구심사위원회는 KGCP 및 ICH-GCP 규정을 준수하며,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.

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임상연구심사위원회



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

연구자의 임상시험/연구 수행 시 지켜야 할 사항

- 1.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십시오.
- 2. 연구진행에 있어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의 어떠한 변경이든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수행하십시오. 연구대상자들의 보호를 위해 취해진 어떠한 응급사항에서의 변경도 즉각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.
- 3. 동의서 취득시 연구대상자 동의서는 CTSC 시스템 내에서 승인유효기간이 전자 날인된 동의서를 출력하여 사용하십시오.
- 4.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승인된 동의서를 연구대상자의 모국어로 인증된 번역본을 사용할 것이며, 이러한 동의서 번역본은 반드시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5. 강제 혹은 부당한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과정을 수행할 것이며, 잠재적인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에의 참여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6. 연구대상자 모집광고는 사용 전에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.
- 7. 위원회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등록된 어떠한 연구대상자라도 사망, 입원, 심각한 부작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.
- 8.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보고를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- 9. 임상시험 또는 연구대상자의 안전에 대해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정보도 즉각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.
- 10. 승인된 연구의 지속을 위해서는 연구승인유효기간 이내에 지속심사를 신청하여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. (승인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전 심사신청 권장)
- 11. 임상시험이 종료(조기종료를 포함)된 경우, 승인만료일 이전까지 연구종료 요약자료와 함께 임상연구 종료보고서를 IRB에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합니다.
- 12. 연구 완료 후 임상연구 관련 문서는 관련 법률 및 기관규정에 따라 이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, 상세 절차는 임상시험센터 문서보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출력시간: 2022-06-02 21:56:51 Page: 2/2